

##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모집공고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로 신청·접수 바랍니다.

2025. 1. .

###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1. **사업명** :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70,200천 원(국비50%, 시비40%) ※ 자부담 10%
3. **신청기간** : 2025. 1. 23.(목). ~ 2025. 2. 21.(금)

#### 4. 지원내용 및 금액

가.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 지원(자부담 10%)
- 단, 사업장당 1개 골목(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며,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

※ 총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나. 지원단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5.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우선지원 :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시설, ③ 신규시설 중 5종, ④ 신규시설 중 4종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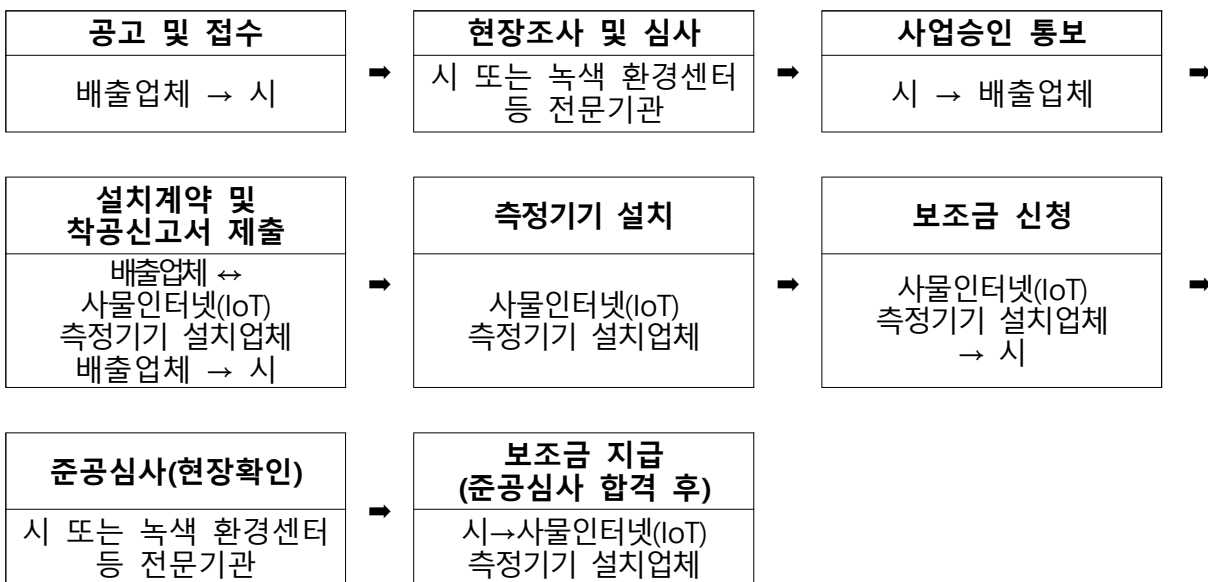
※ 우선지원 대상은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준이며, 경합 발생 시 법정기한이 도래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우선지원(신청 시 최근 2개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첨부 / 2년 평균치 적용)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나.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다.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라. 사업신청 :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를 市에 제출

마. 신청서 등 검토 : 보조금 사업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등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현장조사)

바. 사업승인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市에 통보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市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市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사.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市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市에 제출하여야 함

**아. 측정기기 설치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월)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자.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1개월 이내에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까지 연장 가능

**< 보조금 신청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市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6. 준수사항

### 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준수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 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제26조의6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제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②제26조의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③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7. 유의사항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시설을 설치한 후 3년 이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가동 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8.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세부사항 등은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세종특별자치시 결정에 따름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팀(☎ 044-300-4234)

## 9. 신청서 제출기간 : 2025. 1. 23.(목). ~ 2025. 2. 21.(금)

## 10.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신청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우편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보람동) 스마트허브Ⅲ 6층, 환경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붙임 1. 관련지침 1부.

2. 사물인터넷(IoT)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끝.